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 1 조)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약관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들입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대응 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 2 조)

1. 당 호텔에 숙박계약을 신청하실분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고하셔야합니다.
 - (1) 숙박 자 명
 - (2) 숙박날짜 및 도착예정시간
 - (3)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 1 의 기본 숙박료 참조) 의한
 - (4) 기타 당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제 2 호의 숙박날짜를 초과하여 숙박연장을 신청할 경우, 당 호텔은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을 처리합니다.

숙박계약의 성립

(제 3 조)

1. 숙박계약은 당호텔이 전조의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합니다. 단, 당호텔이 승낙하지 않은것을 증명한 경우에만 예외로 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약관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3 일을 넘을때는 3 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을 적용하고, 제 6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에 이어서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2 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 할 수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할 때에 당 호텔이 그 사실을 숙박객에게 고지 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하지 않는 특약

(제 4 조)

1.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성립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때도 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하는데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 2 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제 5 조)

1. 이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숙박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2)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 될 때.
 - (4)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의 이,로,하 까지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
 - a)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1991년법률제 77 호) 제 2 조제 2 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라고 한다) 동조 제 2 조제 6 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폭력단원") 폭력단준구성원 또는 폭력단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b)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 c) 법인에서 그 임원 가운데 폭력단원에 해당 하는자
 - (5) 숙박하고자하는자가 다른숙박객에게 현저한 성가을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 자임이 분명히 인정 될 때.
 -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 (8)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 할 때.
 - (9) 오키나와현 여관 업법시행 조례 제 5 조의 규정 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주)위의 법 제 5 조 조례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각 호의 같다.
- a) 숙박하고자하는자가 만취 및 언동이 현저히 비정상적이고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인정 될 때.

- b) 숙박하고자하는자가 신체 또는 의복등이 현저히 불결한이기 때문에 다른 숙박자에게 피해를줄 우려가 인정 될 때.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제 6 조)

1. 숙박객은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 할수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귀책 사유로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당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지불을 요구했을 경우이며, 그지불이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 한 경우를 제외한다) , 별표 제 2 에 기재 한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호텔이 제 4 조 제 1 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특약에 응있어서 숙박객이숙박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의 무에 대해, 당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없이 숙박 당일 오후 9 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 그시간을 2 시간 경과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숙박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호텔의 계약 해제권

(제 7 조)

1. 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 될 때.
 - (2) 숙박객이 다음과 이 부터 하 에 해당될 때.
 - a)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b)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c) 법인에서 임원가운데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
 - (3) 숙박객이 다른 손님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4) 숙박객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될 때.
 -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 (6) 천재 화재등 불가항력으로 일어나는 일에 의해 숙박을 불가능 때.
 - (7)오키나와현 여관 업법시행 조례 제 5 조의 규정 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주)위의 법 제 5 조 조례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각 호의 같다.

- a) 숙박하고자하는자가 신체 또는 의복등이 현저히 불결한이기 때문에 다른 숙박자에게 피해를줄 우려가 인정 될 때.
- b) 숙박하고자하는자가 신체 또는 의복등이 현저히 불결한이기 때문에 다른 숙박자에게 피해를줄 우려가 인정 될 때.
- (8) 침실에 누워서 담배를 피우는 일, 소방용설비에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규칙의 금지 사항(화재예방상 필요한용품의 한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숙박객이 아직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않습니다.

숙박등록

(제 8 조)

1. 숙박객은 숙박당일 당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하여야합니다.
 - (1) 숙박객의이름, 나이, 성별, 주소 및 직업
 -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연월일
 - (3) 출발일 및 출발예정 시각
 - (4)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 12 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등 화폐의 대신 방법으로 지불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제시 부탁드립니다.

객실 사용시간

(제 9 조)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2 시부터 다음날 오전 11 시까지 입니다. 그러나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는 도착 당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 (1) 초과 3 시간까지 객실 요금의 30 %
 - (2) 초과 6 시간까지 객실 요금의 50 %
 - (3) 초과 6 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의 100 %

이용 규칙의 준수

(제 10 조)

숙박객은 당호텔 내에서는 당호텔이 정하여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라야합니다.

영업시간

(제 11 조)

1.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다. 기타 시설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기존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서비스 디렉토리 등 통해서 안내드립니다.
 - (1) 프런트, 개시어(현금 출납 담당자) 등 서비스 영업 시간
 - a) 폐문 시간 로비(넓은 휴게실)층 정문 24 시간
 - b) 프런트 24 시간
 - c) 프런트 계산 24 시간
2.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해합니다.

요금 지불

(제 12 조)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 1에 기재 한 내용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 현금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등 이에 대신 할 수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의 출발때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 계산 에서 지불합니다.
3. 당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가능하게 된후에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당호텔의 책임

(제 13 조)

1.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에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 호텔의 규칙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소방 기관에서 적용 마크를 수령했습니다. 만일의 화재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 한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 경우

(제 14 조)

1. 호텔은 숙박객이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숙박객의 허락을 받아 최대한 동일한 조건에 숙박 시설을 알선 해 드립니다 .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 알선을 할 수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금액의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그러나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것에 대해 호텔의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임치물 등의 취급

(제 15 조)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러나 숙박객이 미리 종류 및 금액의 고지 안했을 경우에는 10 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내에 반입하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고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러나 숙박객에게서 미리 종류 및 금액의 고지를 안했을 경우에는 10 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 16 조)

1. 숙박객의 수화물이 숙박전에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도착 전에 당 호텔이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고 숙박객이 도착하면 프런트에서 체크인 할 때 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 아웃 후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남아있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판명 된 경우에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지시가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견날을 포함 7 일간 보관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전 2 항의 경우에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 1 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제 2 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 17 조)

-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의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으로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지않습니다 . 그러나 주차장 관리에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 18 조)

-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숙박객은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별표 제 1

숙박요금의 산정 방법 (제 2 조 제 1 항 및 제 12 조 제 1 항 관련)

		내역
숙박객이 지불 해야할 금액	숙박료	① 기본숙박료 (객실료, 및 객실+조식) ② 서비스료 (①× 10 %)
	추가요금	③ 음료수(및 추가음료, 조식외의 음료수)기타 이용요금 ④ 서비스료 (①× 10 %)
	세금	소비세등

비고

- 기본숙박요금은 태리프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소파침대, 보조침대의 이용시에는 규정의 따른 요금을 지불하셔야합니다.

2. 기타 이용 요금은 전화 요금, 세탁요금등이 있습니다.

별표 제 2

위약금 (제 6 조 제 2 항 관계)

계약의 해제 통지를 받은 날계약 신청 인원		불박	당일	전날	3일전	7일전	9일전	20일전
일반	일반 (14 명까지)	100%	100%	50%	50%	20%	20% ※ 1	20% ※ 1
단체	15 ~ 99인명까지	100%	80%	20%	10%	10%	10%	
	100 명이상	100%	100%	80%	20%	20%	20%	10%

비고

※ 1 특정한 날짜(12/27~ 1/3, 5/3~ 5/5, 8/13~8/15) 숙박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는 기본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 일분(첫날)의 계약금을 받습니다.
3. 단체 (15 명이상)의 일부원이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숙박 10 일전(그날이후에 신청을 접수 한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의숙박인원의 10% (우수리가 나왔을 경우에는 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4. 이외에도 당호텔이 기획하는 아침 식사등 숙박패키지 또는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규정과 다른 위약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